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」 및 「공공건축심의」 시행 알림

1. 도시공간개선단-304('20.1.9)호와 2488('20.2.24)호 관련입니다.
2.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('19.12.19)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「**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**」 및 「**공공건축심의**」를 시행하오니 공공건축사업 추진시 동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(법 제23조, 시행령 제20조)

- 대 상 :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
- 신 청 : 매월 첫째,셋째주 화요일까지 (월2회)
- 시 기 :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

나. 공공건축심의 (법 제22조의3, 시행령 제19조의3,4)

- 대 상 : 설계비 추정가격 0.5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
- 신 청 : 매월 둘째주 화요일까지 (월1회)
- 시 기 : 설계용역 입찰공고(설계공모 포함) 전

3.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 관련 문의는 도시공간개선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(02-2133-7721,76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. 1.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시행 안내문 1부.  
2. 신청서식 1부.  
3. 사업 규모별 공공건축조성 업무절차 1부.  
4.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알림 브로셔 1부. 끝.

